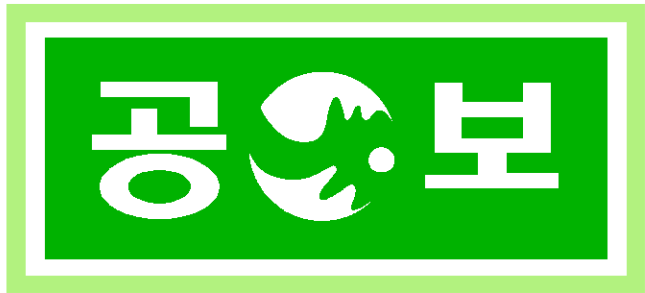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	기 관 의 장



제 823 호 2013. 6. 24(월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-101호[2013년도 개발제한구역 외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고시]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-105호[도로명주소 고시] 3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-106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5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-107호[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사항 고시] 7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-584호[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(안)] 8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-599호[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조례안
입법예고(안)] 10

회 관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4 행정7124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3 - 101호

2013년도 개발제한구역 외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고시

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복구지역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. 6. 24.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울산광역시 복구지역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(개발제한구역 제외)

(단위 : 원/㎡)

연번	지 목	개별공시지가 평균치	연번	지 목	개별공시지가 평균치
1	전	172,355	15	철도용지	61,923
2	답	108,613	16	제 방	54,421
3	과 수 원	165,999	17	하 천	56,784
4	목장용지	110,191	18	구 거	74,137
5	임 야	10,257	19	유 지	67,878
6	광 천 지	-	20	양 어 장	-
7	염 천	-	21	수도용지	115,485
8	대	560,694	22	공 원	115,561
9	공장용지	222,460	23	체육용지	240,838
10	학교용지	397,403	24	유 원 지	239,297
11	주 차 장	385,716	25	종교용지	292,558
12	주유소용지	577,435	26	사 적 지	25,400
13	창고용지	413,687	27	묘 지	132,415
14	도 로	115,830	28	잡 종 지	214,594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- 105호

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6월 24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길 26-1외 11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i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3. 6. 24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중점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신상명준자 구 788 5-1L	울산광역시 북구 범주1길 26-1(신상동)	2013-06-24	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범주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2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준자 구 788 5L	울산광역시 북구 명준1길 26(진장동)	2013-06-24	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준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3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07, 607-1, 607-4, 607-5, 607-6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1길 5(양정동)	2013-06-24	양정이란 배드니무기 많이 있어 지어진 이름이며 현재의 이 지요 데 표지명으로 누구 1 일고 있는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1-05	
4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59-11	울산광역시 북구 동대2길 3(호계동)	2013-06-24	기 존 외관 길이 추상형사이므로 도로명 사용으로 부조명하고 동대도 에 표기하므로 일련번호 방식에 의뢰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8-20	
5	울산광역시 북구 엄포동 산86	울산광역시 북구 새장리8길 23-9(엄포동)	2013-06-24	신길내가 삼포개랑 당시 새장터(소금피는정)로 사-용하여 새장터도 도로명 부여하였다.	2009-01-12	
6	울산광역시 북구 진극동 산171-1	울산광역시 북구 발전로 30(진극동)	2013-06-24	발전동 사인부라 명칭을 사용하면서 노보명 부여하였다.	2010-04-27	
7	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567	울산광역시 북구 신기3길 19-11(매곡동)	2013-06-24	기 존 자연마을인 신기마을에 의치하여 구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8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54-8	울산광역시 북구 동대2길 17(호계동)	2013-06-24	기 존 외관 길이 추상형사이므로 도로명 사용으로 부조명하고 동대도 에 표기하므로 일련번호 방식에 의뢰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8-20	
9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준자 구 348 1L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2길 7-2(진장동)	2013-06-24	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출신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10	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443-9	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48-24(화봉동)	2013-06-24	지인부리 명칭을 사용해서 도로명 부여하였다.	2010-04-27	
11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준자 구 128 9L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도 89(진장동)	2013-06-24	진장동에 소재하는 도로로 법정동인 진장동의 이름을 반영하여 도로 명을 부여 하였다.	2008-02-29	
12	울산광역시 북구 대인동 79-1, 67	울산광역시 북구 대인2길 12-23(대인동)	2013-06-24	예전 지명인 대인 명칭을 사용해서 도로명 부여하였다.	2004-08-09	지번정정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3 - 106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6월 24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새장터7길 33-2외 7건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(별지참조)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청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3. 6. 24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.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

연번	도로명주소	증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새장터7길 33-2	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동 162-1	2013-06-24	멸실	
2	울산광역시 북구 기동길 13-23	울산광역시 북구 기대동 444-2	2013-06-24	멸실	
3	울산광역시 북구 명춘11길 36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춘지구 119B 1-2L	2013-06-24	멸실	
4	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인로 1787-2	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52-16	2013-06-24	멸실	
5	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인로 1635	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311-15	2013-06-24	멸실	
6	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인로 1667	울산광역시 북구 신흥동 248-1	2013-06-24	멸실	
7	울산광역시 북구 대안4길 207-2	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486	2013-06-24	멸실	
8	울산광역시 북구 창좌길 47	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36-1	2013-06-24	멸실	

울산광역시북구 고시 제2013 - 107호

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13년 6월 21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□ 고시내역

허가 번호	허가자 주소		성명	점용장소	점용목적	면적 (㎡)	허가기간	사용료 (위)	비고
'13 -20	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367-13		강석진	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367-13번지 지선	수상레저기구 관리소 및 계류장 설치	182㎡	2013. 7. 1. ~ 2013. 8. 31	375,610	조각부 허가

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3 - 584호

「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
제정(안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문기구) ① 울산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(이하 “추진위원회”라 한다)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행사운영 지원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자문위원회, 행정지원단 등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외부 인사를 임시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.

③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울산쇠부리축제(이하 “축제”라 한다)와 관련된 사항
2. 추진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
3.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

④ 행정지원단은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원들로 구성하며,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제 행사지원계획 등을 수행한다.

제3조(사무국) ① 「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무국에 두는 직원은 사무국장 1명, 사무원 1명으로 한다. 단, 축제 행사시 필요할 경우 임시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.

② 사무국 직원은 관계 규정에 따라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임용 등) ① 사무국장은 공개모집에 의하고,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한 사무국장을 재임용할 수 있으며, 이때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사무원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명한 후,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임시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기간, 인원 및 보수액 등에 대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5조(보수) ①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사무국장은 일반직 공무원 6급, 사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준하는 봉급을 지급한다.

② 사무국 직원에 대한 초임 획정은 경력 및 능력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.

③ 호봉은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제3조제1항에 의한 공개모집에 따라 재임용된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할 수 있다.

제6조(수당) ① 사무국 직원의 수당은 명절수당, 급식비, 시간외근무수당,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한다.

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제7조(회계연도)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8조(예산운영) ① 추진위원회는 축제 추진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교부된 보조금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하며, 변경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추진위원회는 예산의 적정 집행에 대한 평가·관리를 위하여 정산서류를 반기마다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기타 수입금 내역은 축제 개최결과 정산 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감사) ① 사무국장은 예산집행 상황과 축제 개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부 받은 후,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추진위원회 승인은, 축제개최 결과보고는 축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, 연간 예산집행 상황은 다음연도 1/4분기 중에 하여야 한다.

제10조(보고)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축제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- 599호

「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6월 21일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(안)

□ 개 정 이 유

- 북구의회 이해경의원이 발의하여 2013. 5. 24.자로 전문개정된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조항 변경 및 자료대출 대출권수 조정을 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□ 주 요 내 용

- 자료대출 통합권수 신설 (안 제7조)
-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(안 제8조)
- 이동도서관 대출권수 삭제 (안 제14조)

□ 의 견 제 출

-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3. 7. 11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도서관과장,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과 중앙도서관담당(전화 052-241-7411, 팩스 052-241-7409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 -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 - 기타 참고사항

□ 기 타 사 항

- 개정안 전문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2013 - 599호

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조례안

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자료열람 및 대출) ② 관외대출은 1회 5권, 도서관 통합 8권 이하로 하며,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자료의 복사 등) ① 「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12조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고,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복사신청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이동도서관 운영) ④ 이동도서관의 대출기간은 제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1. 신구조문 대비표]

현 행	개 정 안
<p>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</p>	<p>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</p>
<p>제7조(자료열람 및 대출) ② 관외대출은 <u>1회 5권 이하, 7일 이내로 한다.</u>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자료열람 및 대출) ② ----- <u>1회 5권, 도서관 통합 8권 이하로 하며,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.</u> ----- -----.</p>
<p>제8조(자료의 복사 등) ① 「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」 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13조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고,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복사신청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자료의 복사 등) ① ----- ----- ----- 제12조 제2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4조(이동도서관 운영) ④ 이동도서관의 대출기간은 제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<u>1회 5권 이하, 14일 이내로 한다.</u></p>	<p>제14조(이동도서관 운영) ④----- ----- --- (삭제) -----.</p>